

환경영향평가의 재정립

권속표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교수

Re-evalu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Sook-Pyo Kwon

Institute for Environmental Research, Yonsei University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황

1969년 미국 NEPA가 공포된후 미국에서 환경영향평가는 1970년부터 실시되었다.

당초에 NEPA는 ①人間과 그 환경간에 생산적이고 쾌적한 조화를 조장하는 국가적정책을 선언하고 ②환경과 생물권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고 또는 제거하고 인간의 건강과 복지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것 ③국가에서 중요한 생태계와 천연자원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④환경자문위원회 (CEQ)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 규칙 및 공법은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이법에서 정한 정책에 따라 해석되고 시행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또한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은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① 인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계획 입안과 결정적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자연과학, 사회 과학 및 환경설계 기술의 총합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게 체계적, 학술적인 Approach를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정행위를 할때에는 경제적, 기술적인 고려와 함께 현재에서는 계량화되지 않는 환경의 쾌적함과 가치와

의 적당한 고려를 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과 수속을 이 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환경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명확히 하고 또한 이것을 책정한다.

이때 환경영향평가의 대상행위는 “인간 환경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法案, 기타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에 관한 모든 권고 내지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102조(2))°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법은 미국에 있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경제성장, 토지이용, 개발, 새로운 과학기술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자원의 손실, 건강피해, 쾌적성상실, 문화유산의 손상등의 직접적, 간접적,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 또는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79년에 미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환경보전법에 “협의”(관계기관의 협의)조항이 되고 1980년에 “환경영향평가”가 정식 삽입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관계기관의 반대로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정부가 실시하는 대규모개발사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 후 각종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그로 인한 환경영향이 다양화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확대되어 왔다.

1993. 6. 1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 4567호)에 서는 대통령령으로 16개 사업을 지적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법 4조)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공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 건설
5. 도로 건설
6. 수자원 개발
7. 철도(도시 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8. 공항의 건설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0. 매립 및 개간사업
11. 관광단지 개발
12. 체육시설의 설치
13. 산지의 개발
14. 특정지역의 개발
15.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16.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환경영향평가의 전망

1) 관계법의 평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항만관리법, 폐기물처리법, 공업단지 촉진법, 산림, 농촌, 에너지, 수자원 관계법은 토지이용과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집결하여 장차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입법제안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간주된다.

이들 영향평가대상법안에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관계법도 포함된다.

2) 특수기술의 평가

유전공학기술, 대량생산기술, 각종 첨단기술은 장차 유해한 소비물자를 대량생산 소비함으로써 자원, 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위험이 있는 생산기술이나 과학기술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국제적 협약의 평가

UR, WTO, 기후 온난화 방지협약, 몬트리올의정서등 가입에 따라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조치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ISO 14000시리즈가 각국 생산기업의 경영인증제도로 적용(1996년 부터)되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경영인증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의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4) 환경기준의 개정

환경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국제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위해도 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해서 국제적인 허용수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환경기준은 건강, 생태계에 다같이 지속가능한 그리고 안전한 기준이 적용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기준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적 차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생태계와 복지의 환경지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각종 사업으로 인한 영향평가가 요구된다.